충청북도 조례 제4171호에 의한 위탁사무임

"입주기업과 함께하는 No.1 산업단지 관리 전문기관"

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

㉾28443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(송정동) / 전화 043)265-0912 / 전송 043)265-0922
관리국장 배기호 / 부장 박경아 / 차장 이종덕 / 담당자 : 과장 우상엽(sangyeob.woo@cjsandan.net)

문서번호 청관공 제2026-397호
시행일자 2026. 06. 24. ( )
수 신 입 주 업 체 장
(경 유) (관 리 부 서 장)
제 목 **산업단지 입주계약 준수 철저 협조요청**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몇 년간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를 공장 외의 시설(생산품 외의 판매장 및 전시장, 계열사 보관창고 등)로 활용하거나, 제조시설을 임의로 철거·이전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, 공장 임대시 임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입주계약에 위반되는 사례들이 종종 적발되고 있습니다.

3.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) 제3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입주계약사항중 회사명, 대표자성명, 업종, 부지면적, 건축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산업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4. 만약, 입주업체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입주계약(당초 제출한 사업계획)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공단은 법 제42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공장등록이 취소되며, 입주업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 또는 다른 입주기업에 양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(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)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또한, 우리 공단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, 위와 같은 유사사례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산업단지 입주업체 준수사항 안내문 1부. 끝.

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사 장